

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경관지구) 변경결정(안) 의견청취

의안 번호	110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5. 5.

제 출 자 : 종로구청장

1. 건 명 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경관지구) 변경결정(안) 의견청취

2. 상정사유

불합리한 자연경관지구를 해제해 달라는 민원검토 결과, 서울시에서 통보한 『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·용도지구 정비계획』의 자연경관지구 해제기준에 합당한 지역으로서 청운동 57-42외 14필지의 자연경관지구를 해제코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함.

3. 주요요지

가. 대상지

- 위 치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57-42외 14필지
- 면 적 : 1,105㎡

나. 도시계획사항

- 제1종일반주거지역/자연경관지구

다. 추진경위

- 2004. 12. 7 :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·용도지구 정비계획통보(서울시→종로구)
- 2005. 1. 5 : 방문민원사항 통보(서울시→종로구)
- 종로구 청운동 52-27 한창조외 1인이 서울시를 방문하여 자연경관지구의 불합리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통보하오니, 기 통보한 『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·용도지구 정비계획』에서 자연경관지구 정비계획의 조정 기준 분류에 의하여 민원지역이 자연경관지구 해제 기준에 합당할 경우에는 종로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절차를 거쳐 서울시에 요청하기 바람.
- 2005. 4. 25 :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경관지구) 변경결정(안) 검토보고
- 『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·용도지구 정비계획』해제기준중 [기준7,8,9]에 해당
 - [기준7] 경관보호 대상인 주요 녹지축 및 수경축과 분리된 지역
 - [기준8] 반복된 해제로 인해 지정목적이 상실된 지역
 - [기준9] 주택재개발·재건축등으로 고층 고층건축물로 둘러싸인 지역
 - [기준10] 자연경관지구의 경계선이 관통하는 1,000㎡이하의 소규모 필지
- 2005. 4. 27 : 도시관리계획(안) 열람공고

4. 입안내용

가. 도시관리계획(용도지구:자연경관지구) 변경결정(안)

구분	지구명	위 치	면적(㎡)	최초결정일	비고
기정	인왕지구	종로구 청운동 57-42외 14필지	751,926	2000.12.5	
변경	인왕지구	종로구 청운동 57-42외 14필지	750,821	-	강 1,105

나. 공고 및 열람

- 열람 기간 : 2005. 4.28 ~ 2005. 5. 11(14일)
- 공고 방법 : 일간신문(경향신문, 한국경제) 및 구 홈페이지
- 공고 번호 :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고 제2005-207호
- 열람 장소 : 종로구청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
- 제출된 의견 : 없음

첨부 : 위치 및 현황사진 1부. 끝.